

독도의 영유권분쟁

3. 독도수호국제연맹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침탈 전략에 맞서기 위해 독도수호사관 생도를 양성하고 전세계의 지도 및 웹사이트, 각종 출판물에 표기된 '다케시마 (Takeshim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삭제하고자 결성된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독도의 영유권분쟁

4. 독도우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발행된 우표.

독도의 영유권분쟁

5. 독도의 용수비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었던 민간 단체.

독도의 영유권분쟁

5. 독도의 용수비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었던 민간 단체.

독도의 영유권분쟁

5. 독도의 용수비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었던 민간 단체.

청과 일본의 관계



청과의 관계

병자호란 이후 표면상으로는 사대 관계(사신 왕래와 교역 활발)를 유지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전란 후 민심을 수습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북벌 추진은 서인의정권 유지 수단으로만 이용될 뿐이었다.

이 시기 청의 문물이 발달하면서 사신들의 기행문과 보고서를 통해 청의 사정이 전파되며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배우자는 주장이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데 이것이 북학론이다. 반면 청의 만주 성역화 작업과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청과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간도 귀속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과 청은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정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1712)

이후 19세기 후반 토문강 위치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조선은 을사조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본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남아있다.

청과 일본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 문물을 도입할 목적으로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유정(사명대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를 체결하고, 조선인 포로를 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기유약조를 체결하고(1609) 부산포에 왜관을 설치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 또한 막부의 파견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막부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통신사는 12회에 걸쳐 대규모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다.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국빈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일본과의 관계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청과 일본의 관계



울릉도와 독도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 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다. 신라의 지증왕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전한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다. 정부는 적극적인 울릉도 경영 정책으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그곳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였으며 독도까지 관할하도록 하였다.

관련지식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이다. →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현조의 본문 : “우산도·울릉도, 무릉이라 하고 우릉이라고도 부른다.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세 봉우리가 하늘로 곧게 솟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낮다.”라고 되어 있다. (본문 보다 주기를 강조하는 것은 사료 해석 방법의 오류임)

관련지식



일본 역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1876년 일본 내무성의 결정 :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여 사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마네현은 영유권 분쟁 문서를 5개월 동안 검토한 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결론지었다.

일본인이 그린 지도에도 조선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 1785년(정조 9년) 하야시의 「삼국통람도설」을 번역한 클라프로트의 「삼국통도」에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관련지식



연합군 사령관도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반도의 부속 도서 중 크고 작은 섬만을 열거했을 뿐 독도와 같은 무인 도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 마라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마라도가 일본영토는 아니다!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 :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 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시켰다.